

2015.4.21.(화) ~
4.27.(월) / 7일간

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 4
2.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 4
3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..... 5
4.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 6
5.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..... 6
6.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..... 7
7. 2015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..... 8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○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2015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	수정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4. 14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관련 법령 개정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- 주요내용
 -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 삭제(제6조)
 - 「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(2014.12.18.)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장성군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
 - 기금 존속기한 신설(제7조)
 - 기금의 일몰제 적용 의무화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(2019년 12월 31일까지)로 명시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4. 27.)

2.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4. 14.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관련 법령 개정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

- 주요내용

-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 삭제(제5조)

- 「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(2014.12.18.)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장성군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

- 기금 존속기한 신설(제5조의2)

- 기금의 일몰제 적용 의무화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(2019년 12월 31일까지)로 명시
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4. 27.)

3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4. 14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“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”에 따른 순증 인력분 반영과 장성군의 문화콘텐츠, 역사, 군지 발간 및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직 공무원 확충

- 주요내용

- 정원조정 : 582명 → 583명(사회복지직 확충 순증 인력분 반영 1명)

- 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표 중

- 본 청 : 6급이하 중 1명(사회복지9급)
- 본청/직속기관 : 6급이하 감 2명(운전 9급, 의료기술 8급)
- 본 청 : 연구사 중 2명(기록물연구사, 학예연구사)
- 법적근거 : 지방자치법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4. 27.)

4.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4. 14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「금연지도원」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신설
 - 금연지도원 직무 수행범위 신설
 -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관리 신설
- 법적근거
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4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4. 27.)

5.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- 제출일자 : 2015. 4. 14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취득재산의 위치 및 면적 변경과 취득가액 조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○ 삼계면 사창시장 부지매입(변경)

- 2013. 11. 사창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지매입비 변경으로 변경안 수립

○ 서삼면 보건지소 신축(변경)

-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보건지소 위치 변경

○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설치(변경)

- 2014. 12.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변경

▪ 법적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4. 27.)

6.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4. 14.
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후,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발굴 및 개정요청
 -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-766(2013.9.30.)호,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-8673(2013.10.1.)호 개정여부 제출
- 주요내용
 -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(제5조제1항2호) :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
 - 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
 -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사유 추가
 - 장애인, 경자동차, 10부제자율참여자동차 ⇒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
- 법적근거 : 『주차장법』(제8조, 노상주차장의 관리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4. 27.)

7. 2015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- 제출일자 : 2015. 4. 14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주요내용
 -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,451억 7천 4백만원

으로 기정액 3,255억 6천 3백만원 보다 196억 6천만 1백만원이 증액

○ 그 중 일반회계는 3,340억 3천 8백만원으로 192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고 ,특별회계는 111억 3천 6백만원으로 3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됨.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

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	비 고
계	345,174	325,563	19,611	6.02%	
일반회계	334,038	314,791	19,247	6.11	
특별회계	11,136	10,772	364	3.38	
의료급여사업	1,309	1,309	0	0	
농공지구조성 및 관리	1,922	1,922	0	0	
주차장 운영	1,613	1,613	0	0	
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	144	125	19	15.62	
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	65	65	0	0	
드림빌	3,069	3,069	0	0	
주택사업	9	9	0	0	
주민소득지원 기금	346	346	0	0	
상수도사업	2,660	2,315	345	14.88	

■ 심사결과

- 세 입 : 345,174,205천원

가. 삭 감 : 해당없음

나. 증 액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요구액	심 사 결 과			
		세 입			인정액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345,174,205	-	-	-	345,174,205
일반회계	334,038,211	-	-	-	334,038,211
특별회계	11,135,994	-	-	-	11,135,994

라. 삭감조서 및 증액조서 : 해당없음

- 세 출 : 345,174,205천원

가. 삭 감

1) 일반회계 : 3,822,100천원

2) 특별회계 : 천원

나. 증 액

1) 일반회계 : 3,822,100천원

2) 특별회계 : 천원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요구액	심 사 결 과			
		세 출			인정액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345,174,205	3,822,100	3,822,100	0	345,174,205
일반회계	334,038,211	3,822,100	3,822,100	0	334,038,211
특별회계	11,135,994			0	11,135,994

라. 삭감조서

1)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 구 액	삭 감 액	인 정 액
	계	6건	4,038,500	3,822,100	216,400
114	402-01	장성의 역사인물 영정 제작	200,000	200,000	-
117	401-01	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주변 조경공사	300,000	100,000	200,000
119	307-02	생활체육교실 운영	10,500	2,100	8,400
144	401-01	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	500,000	500,000	-
167	401-01	제2황룡교 보수·보강	3,000,000	3,000,000	-
235	401-01	도시민 텃밭농장 휴게시설 설치	28,000	20,000	8,000

2) 특별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			
		해 당 없 음			

마. 증액조서

1)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증 액	인정액
	계	1건	730,285	3,822,100	4,552,385
109	801-02	재난·재해목적예비비	730,285	3,822,100	4,552,385

2) 특별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증 액	인정액
	계				
		해 당 없 음			
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4. 27.)